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
----------	-----

2022.11. 30.(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1월 24일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힘  
(안 제1조)
-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 보완(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2조, 제3조, 제4조)

##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상위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임근거를 구체화함.
- 안 제3조는 적용대상 내에서 다른 조례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상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범적 효력 우위에 있는 법령을 삭제하고 동위에 있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
- 안 제2조,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
-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

-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2. 10. 31. ~ '22. 11. 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의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를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 으로 한다.

제2조 중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을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으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를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으로, “조례가” 를 “조례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지원 할” 을 “지원할”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조금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보조금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도감독)” 을 “(지도·감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을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으로, “필요한” 을 “시정요구 등 필요한” 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5조제3항 및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5조제3항 및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59조제2항-----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u>자와</u>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4조제1항----- ----- ----- <u>자와</u>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조제8호----- ----- --.</p>
<p>제3조(<u>적용범위</u>)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u>가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제3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 ----- <u>조례</u>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 <u>조례</u>에서 ----- ----- <u>따른다</u>.</p>
<p>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생략)</p>	<p>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  
----- 지  
원할 -----, ----- 보조금  
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시정요구 등 필  
요한 ---.

<삭제>

## 관계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⑤ (생략)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7. (생략)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13. (생략)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략)